MRTC Statistical Brief No. 2025-09

무사증 입국제도 및 불법체류현황과 제도적 과제

김화연 부연구위원, 유민이 연구위원

요약

이번 브리프에서는 무사증 입국제도의 운영 현황과 그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무사증 제도는 국가 간 인적 교류 확대와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지만,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무사증을 이용한 불법체류 비율이 급증하면서 제도 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브리프에서는 행정통계를 활용하여 무사증 제도를 통한 불법체류 현황을 시기별·국가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과제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무사증입국 제도란

원칙적으로 국가 간 이동을 위해서는 유효한 여권과 사증(Visa, 査證)이 필요하다.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면접 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절차는 신청자에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에 많은 국가에서 무사증(사증면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무사증 제도는 국가 간 협정이나 지정 등을 통해 사증 없이도 외국인을 입국하도록 하여 사증 발급의 번거로움을 없애주는 제도이다.[1] 이 제도로 양국 간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증진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입국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불법체류 증가나 보안상의 위험이 함께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무사증 입국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을 근거하여 동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법무부 훈령 및 지침 등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무사증 입국 허가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①재입국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 내에 입국하는 경우, ②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으로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 ③국제 친선, 관광 등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경우, ④난민여행증명서를 받고 기간 내 입국하는 경우다. 주로 무사증입국제도를 활용한 불법체류 문제는 2번과 3번에서 발생한다. 우리나라에 일반여권 소지자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는 아시아·태평양 21개, 미주 32

1) 외교부 비자영사 홈페이지(https://www.0404.go.kr/)

개, 유럽 43개, 아프리카·중동 16개국 이 있다. 이 국가에서는 상호주의 또는 협정에 따라 별도의 사증발급절차 없이도 한국에 입국이 가능하다(외교부 홈페이지, 2025.3. 기준).[2)]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대다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정해진 기간 동안 한국에 체류한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머물거나 불법적으로 경제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사증 입국자의 불법체류 현황

먼저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현황을 보면, 2005년 27.3%에서 점차 개선되어 2024년에는 15%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절대 규모는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204,254명이던 불법체류자 수는 2024년에는 397,522명으로, 약 20년간 거의 2배(94.6%)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한 불법체류자의 수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2005년 기준, 전체 불법체류자 중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경우는 약 11%에 불과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54.1%까지 상승하였다.[3)] 코로나19가 확산하던 기간에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치는 여전히 44.9%에 달하고 있다. 즉, 국내 불법체류자의 절반 가까이가 무사증 입국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중에서도 사증면제(B-1) 입국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무사증(B-1, B-2) 불법체류 현황

(단위: 명, %)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증면제	15,130	16,223	17,115	16,291	14,156	14,569	16,092
관광통과	7,394	8,818	7,933	8,709	9,656	13,954	17,303
전체 불체 중 무사증 (%)	11%	11.8%	11.2%	12.5%	13.4%	16.9%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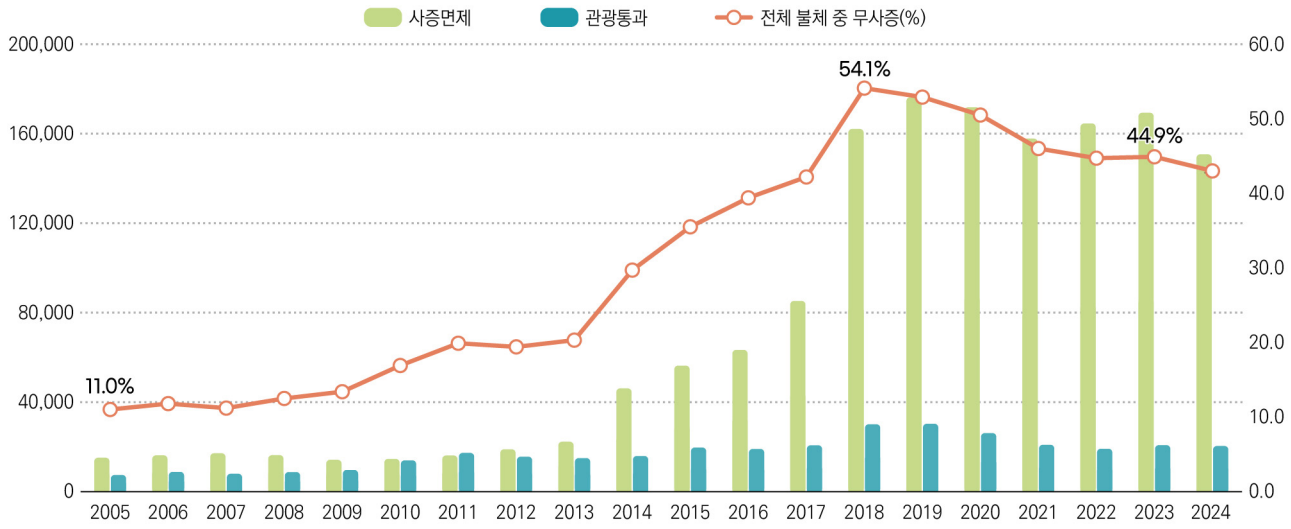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증면제	18,902	22,241	46,117	56,307	63,319	85,196
관광통과	15,588	14,984	15,899	19,658	19,038	20,662
전체 불체 중 무사증 (%)	19.4%	20.3%	29.7%	35.5%	39.4%	42.2%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사증면제	162,083	176,244	171,805	157,747	164,523	169,283	150,733
관광통과	30,028	30,272	26,111	20,864	19,133	20,757	20,341
전체 불체 중 무사증 (%)	54.1%	52.9%	50.5%	46.0%	44.7%	44.9%	43%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5~202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2) 외교부 비자영사 홈페이지(https://www.0404.go.kr/)
3)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정부에서는 참가자와 관람객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했었으며, 당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불법체류의 규모가 급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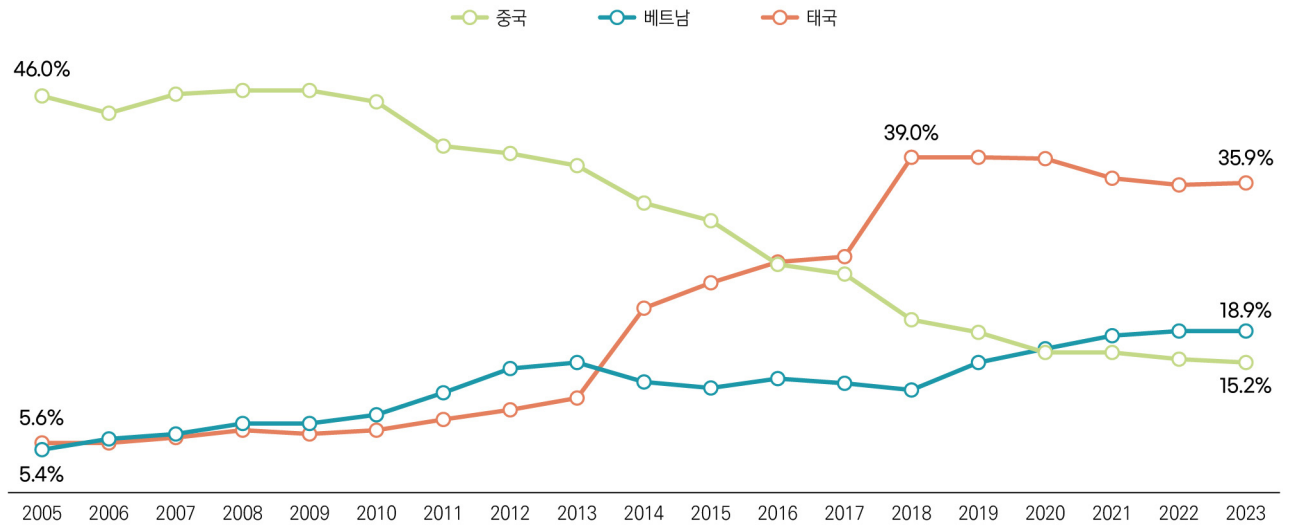
〈그림 1〉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 중 무사증 입국자의 비율



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5~202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다음으로 국가별 불법체류 현황을 살펴보았다. 2005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태국, 베트남은 불법체류자 수가 가장 많은 상위 3개국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3개 국가 간 순위에는 변화가 있었는데 2005년 당시에는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2007년 방문취업제도(H-2)제도가 도입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4] 반면 2014년 이후 태국 출신의 불법체류자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전체 불법체류자 중 태국 출신이 39%로 정점에 달했으며 2023년에도 35.9%로 가장 많다.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2〉 전체 불법체류자 중 중국, 태국, 베트남 국적자 비율 변화



자료: 법무부. (2024)「무사증국가 불법체류자 발생 억제를 위한 대응체계 및 절차 마련에 관한 연구」
*통계자료: 별도제공

4) 중국 내 경제여건이 개선되고 방문취업제도(H-2)의 도입 등으로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는 꾸준히 감소하였다.

그렇다면 무사증을 통해 입국한 경우는 어떨까? 2005년, 2014년, 2023년의 무사증 불법체류 다발국가 상위 10개국을 확인해보았다. 먼저 2005년에는 태국-방글라데시-미국-중국 순으로 나타났고, 2014년에도 태국, 중국, 방글라데시, 미국, 파키스탄 순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무사증을 이용한 태국인의 불법체류율은 2005년 27.9%에서 2023년 76.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과 태국 간 저가항공 노선 확대와 한류 열풍으로 관광 수요가 급증한 점, 그리고 이 시기를 틈타 브로커와 알선업자를 통한 불법취업 목적의 유입이 늘어난 결과로 짐작된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2005년 22.4% 수준이었다가 2023년에는 0.8%로 감소하였다.[5] 이는 2008년 방글라데시와 사증면제협정이 중지된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2023년 기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말레이시아'가 상위 10개국 내 등장하였다. 러시아와는 2013년, 카자흐스탄과는 2014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현재 태국, 중국 다음으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가 무사증을 활용한 불법체류 다발국가에 순위를 올리고 있다.

〈표 2〉 무사증을 이용한 국적별 불법체류 현황

국가 (Top 10)	2005년 (무사증 불체율: 11%)		국가 (Top 10)	2014년 (무사증 불체율: 20.3%)		국가 (Top 10)	2023년 (무사증 불체율: 44.9%)	
	명	구성비		명	구성비		명	구성비
합계	22,524	(100%)	합계	62,016	(100%)	합계	190,040	(100%)
태국	6,287	(27.9%)	태국	40,825	(65.8%)	태국	145,042	(76.3%)
방글라데시	5,041	(22.4%)	중국(▲2)	9,307	(15.0%)	중국	14,803	(7.8%)
미국	1,929	(8.6%)	방글라데시(▼1)	1,800	(2.9%)	**카자흐스탄**	10,827	(5.7%)
중국	1,749	(7.8%)	미국(▼1)	1,507	(2.4%)	**러시아(연방)**	7,246	(3.8%)
파키스탄	1,642	(7.3%)	파키스탄	1,242	(2.0%)	말레이시아	1,905	(1.0%)
일본	859	(3.8%)	이집트	982	(1.6%)	미국(▼2)	1,615	(0.8%)
몽골	841	(3.7%)	일본(▼1)	637	(1.0%)	방글라데시(▼4)	1,446	(0.8%)
캐나다	398	(1.8%)	몽골(▼1)	567	(0.9%)	파키스탄(▼3)	1,195	(0.6%)
페루	397	(1.8%)	캐나다(▼1)	463	(0.7%)	베트남(▲3)	927	(0.5%)
홍콩	249	(1.1%)	베트남	345	(0.6%)	몽골(▼2)	693	(0.4%)
기타	3,132	(13.9%)	기타	4,341	(7.0%)	기타	4,341	(2.3%)

자료: 법무부. (2024)「무사증국가 불법체류자 발생 억제를 위한 대응체계 및 절차 마련에 관한 연구」
*통계자료: 별도제공

5) 방글라데시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증가하자 2008년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중단한 바 있다.

아래 〈그림 3〉은 2023년 기준, 태국, 카자흐스탄, 러시아의 국적별 불법체류자 중 무사증 입국자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는 95.3%가 무사증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카자흐스탄은 75.5%, 러시아는 77.6%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표 3〉 국가별 불법체류자 중 무사증을 이용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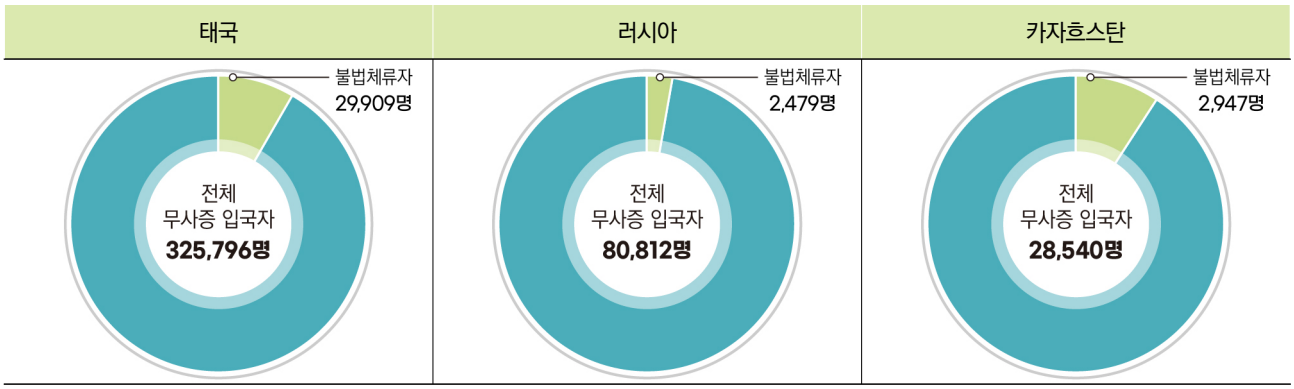
연도	태국	카자흐스탄	러시아
해당국가 불법체류자 수	152,265	13,788	9,339
해당 국가 무사증 불법체류자 수	145,042	10,827	7,246
해당 국가 무사증 불법체류율	95.3%	78.5%	77.6%

출처: 법무부. (2024)「무사증국가 불법체류자 발생 억제를 위한 대응체계 및 절차 마련에 관한 연구」
*통계자료: 별도제공

그러나 불법체류자 중 무사증을 이용한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기에는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제도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2023년 기준, 태국 무사증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가 되는 비율은 9.2% 정도였으며 러시아의 경우 3.1%, 카자흐스탄의 경우 10.3%가 체류기관을 초과하였다. 즉 90% 이상의 외국인이 무사증을 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그림 3〉 2023년 무사증 신규 입국자 대비 신규 불법체류자 규모

(단위: 명)



자료: 법무부. (2024)「무사증국가 불법체류자 발생 억제를 위한 대응체계 및 절차 마련에 관한 연구」
*통계자료: 별도제공

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 사례

사증면제협정은 국가 간에 체결된 국제조약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임의로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 특히 무사증 제도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지정된 경우에는, 정치적·외교적 부담으로 인해 일방적인 정지나 철회가 더욱 제한된다. 따라서 사증면제협정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사례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불법체류가 급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사증면제 협정을 일시정지한 사례가 있다. 파키스탄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일반여권에 대한 무사증 입국이 정지되었고, 방글라데시의 경우 2008년 7월 15일부터 일반여권 및 선원수첩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이 일시정지 되었다. 특히 방글라데시의 경우 사증면제(B-1)소지자의 96.2%가 불법체류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해지자 협정 제8조를 근거로 당시 외교통상부에서 방글라데시 정부에 사증면제협정 일시정지를 통보하였다.

[참고]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사증면제협정에 관한 협정 /제8조

>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

이외에는 2019년 7월 18일 라이베리아와의 사증면제협정(일반여권 및 선원수첩)이 일시 정지된 바 있다. 이는 라이베리아인에 의한 내국인 상대 반사회적 범죄가 증가한 것이 배경이 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며 무사증 입국에 대한 각국의 조치에 따라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취해졌다가 2022년 11월 1일 기준 모두 재개되었다.

무사증 제도의 과제와 개선

무사증 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증면제협정 체결 시 일시정지나 중단, 개정, 철회 등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1981년 태국과의 협정에서는 사증면제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유효기간에 따른 만료나 개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14년 체결한 러시아 연방과의 협정에서는 제9조에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12조에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기한이 무기한으로 설정되어 있다. 유사한 시기에 체결된 카자흐스탄과의 사증면제협정에서도 '정지'(제8조), '종료'(제11조)에 대한 결정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기한이 무기한으로 설정되어 있다. 반면 가장 최근 협정을 맺은 카타르국 정부와의 협정(2022년)에는 제5조에 전체 또는 일부 정지 가능성과 제9조 개정 가능성, 제10조 유효기간(5년)등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부록 참고〉).

〈표 4〉 태국, 카자흐스탄, 러시아와의 사증면제협정 종합

구분	태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카타르국 (최신국가 참고)
정지	○	○	○	○
개정	-	-	-	○
종료	-	○	○	○
유효기간	-	무기한	무기한	5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비교적 과거에 체결된 협정에서는 정지나 개정에 대한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 이러한 경우 '공공질서 유지' 또는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명확한 사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통계적 수치나 실증적 연구 결과 없이 협정의 정지나 개정을 요청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 따른다. 다만, 국제법상 인정되는 '사정변경의 원칙(rebus sic stantibus)'을 적용하여 협정의 중단·개정·종료 가능성을 검토해볼 여지는 있다. 예를 들어, 1981년 체결한 태국과의 협정은 협정 체결 당시와 비교해 현재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정변경 원칙에 근거한 정지 또는 개정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협정의 전체를 종료하기보다는, 일부 조항에 대한 정지 또는 일정 기간 협정 효력을 중단한 후, 불법체류 문제 개선 상황을 지켜본 뒤 재개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나아가 협정 개정 시에는 '불법체류율' 등 구체적인 지표를 협정 이행의 조건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조치는 상대국과의 외교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의와 조정, 그리고 외교적 고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상대국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6)]

마치며

무사증 제도는 국가 간 인적 교류 확대, 관광객 유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입증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신금미·강영준, 2019; 민하나 외, 2014). 반면 실제로 여행 목적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비자는 하나의 고려 요소에 불과하며, 항공 연결성, 여행 비용, 대형 이벤트 개최 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Chi et al.(2022)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비자 면제 대상 국가 수가 증가하더라도 종합적인 관광 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관광객 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관광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72시간 무사증 환승 정책에 대해 공간적 파급효과(spatial spillover)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정책이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 경우도 있다(Gu, 2024).

이처럼, 무사증 제도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 장점과 함께 불법체류자 증가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잡힌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 태국은 국내 관광객 수가 많은 국가이자 한국 교민과 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무사증 중단 시 교민이나 기업인의 상호 단기 방문이나 가족 왕래 등이 불편해질 수 있으며, 양국 간 외교적으로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부록]

대한민국 정부와 태국, 러시아연방,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 간의 사증면제에 관한 각서교환(일부)

[발효일 1981. 12. 9]

국가	구분	주요내용
태국	제8조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발효일 2014.1.1]

국가	구분	주요내용
러시아연방	제9조	1.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를 다른 쪽 당사자가 접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에 종료된다.

[발효일 2014.11.29]

국가	구분	주요내용
카자흐스탄 공화국	제8조	1. 어느 한쪽 당사자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다.**
	제11조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록 2〉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상호 입국사증 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일부)

[발효일 2022. 9. 16]

구분	주요내용
제5조 정지	1. 어느 한쪽 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나 공중보건을 이유로,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새로운 사증 요건을 도입하는 경우에, 이 협정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정지는 늦어도 계획된 정지가 시행되기 30일 전까지 다른 쪽 당사자에 통보된다. 2. 이 협정의 적용을 정지한 당사자는 해당 정지의 이유가 소멸하여 그러한 정지가 해제된 경우 즉시 다른 쪽 당사자에 알린다.
제9조 개정	이 협정은 양 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에 발효한다.
제10조 발효, 유효기간 및 만료	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의사를 적어도 만료일 3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기간씩 연속하여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만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미 다른 쪽 국가의 영역에 체류 중인 어느 한쪽 국가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자료

민하나, 정인행, 김재희. (2014). 비자면제가 관광수요 증가에 미치는 효과분석: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을 중심으로. 호텔관광연구, 16(4), 49-69.

신금미, 강영준. (2019).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 무사증제도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중국지역연구, 6(1), 213-237.

외교부 비자영사 홈페이지 (https://www.0404.go.kr/)

Chi, P. Y., Lee, K. C., & Chang, K. I. (2022). Causal effect of tourist visa exemption schemes on international tourist arrivals.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75, 427-449.

Gu, J. (2024). Does the Visa-Free Policy Promote Inbound Tourism? Evidence From China. SAGE Open, 14(2), 21582440241261676.

통계정보

활용통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5~202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각 연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05~2023) 내부 행정통계 자료
작성기관	법무부
작성유형	행정통계
공표주기	매년

인용

김화연, 유민이. (2025). 무사증 입국제도 및 불법체류현황과 제도적 과제. 이민정책연구원 통계브리프. (2025-9), 이민정책연구원.

집필자 | 김화연, 유민이 **발행인** | 우병렬 **문의** | 02-3788-8046 **발행처** | 이민정책연구원 **발행일** | 2025년 08월

주소 | 13824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2길 54 그라운드브이 6층 Tel. 02-3788-8000 Fax. 02-3788-8099 www.mrtc.re.kr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MRTC
Partner Organization of IOM

본 자료는 이민정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원의 허락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본 통계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MRTC)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ISSN 2982-9852